

고 창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제680호 2023. 5. 10.(수)

선 람	기관(부서)의 장

【조 례】

○ 고창군 조례	제2686호	고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고창군 조례	제2687호	2023년 고창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
○ 고창군 조례	제2688호	고창군 랍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5
○ 고창군 조례	제2689호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 고창군 조례	제2690호	고창군 경로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14
○ 고창군 조례	제2691호	고창군 아이돌봄지원 조례	19
○ 고창군 조례	제2692호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5
○ 고창군 조례	제2693호	고창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8
○ 고창군 조례	제2694호	고창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35
○ 고창군 조례	제2695호	고창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47
○ 고창군 조례	제2696호	고창군 신재효관소리공원 운영 관리조례	50
○ 고창군 조례	제2697호	고창군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60
○ 고창군 조례	제2698호	고창군 자연장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62

회 람								
--------	--	--	--	--	--	--	--	--

발행 고 창 군(편집 행정지원과 ☎ 063-560-2326)

【조 례】

○ 고창군 조례	제2699호	고창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64
○ 고창군 조례	제2700호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68
○ 고창군 조례	제2701호	고창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2
○ 고창군 조례	제2702호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135
○ 고창군 조례	제2703호	고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138
○ 고창군 조례	제2704호	고창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145
○ 고창군 조례	제2705호	고창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52
○ 고창군 조례	제2706호	고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157

【규 칙】

○ 고창군 규칙	제1216호	고창군 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	164
----------	--------	--------------------------------	-----

【고 시】

○ 고창군 고시	제2023-68호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고시	166
○ 고창군 고시	제2023-71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대동, 부정, 회룡)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73

【공 고】

○ 고창군 공고	제2023-973호	고창군 여성친화도시 제3기 군민참여단 모집 재공고	177
○ 고창군 공고	제2023-977호	고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181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3년 5월 10일

고창군 조례 제 2686 호

고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명”을 “7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명의 위원은 법관·교육자”를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교
육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3명중”을 “5명중”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u>5명</u>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1. <u>3명의 위원은 법관·교육자</u>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p> <p>2. (생략)</p> <p>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p> <p>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u>3명</u>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p> <p>2. (생략)</p> <p>③ (생략)</p>	<p>제2조(구성) ① ----- ----- <u>7명</u>----- ----- -----.</p> <p>1. <u>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교육자</u> ----- ----- -----.</p> <p>2.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u>5명</u>중----- -----.</p> <p>2.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2023년 고창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3년 5월 10일

고창군 조례 제 2687 호

2023년 고창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3년 고창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의 제4호“그 밖에 방문의 해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를 “숙박 및 체험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제3조 제1항의 제5호 “그 밖에 방문의 해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를 신설한다.

제3조 제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활동 업무를 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활동 업무를 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제3조제1항의4에 관한 지급 및 한도는 숙박 및 체험시설 이용료의 최대 40%까지 지원 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활동지원)</p> <p>① 군수는 방문의 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그 밖에 방문의 해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p> <p><신설></p> <p>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활동 업무를 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3조(활동지원)</p> <p>①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숙박 및 체험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p> <p>5. 그 밖에 방문의 해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p> <p>② ----- ----- -----</p> <p><u>있으며, 제3조제1항의4에 관한 지급 및 한도는 숙박 및 체험시설 이용료의 최대 40%까지 지원할 수 있다.</u></p>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램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3년 5월 10일

고창군 조례 제 2688 호

고창군 램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창군 램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제1항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르고, 군수는 승인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를 “제1항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르고, 군수는 승인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고창군 통합예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경우 예외로 한다.”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유스호스텔 이용요금(제8조 관련)

구 분	이 용 료(원)				수용인원(명)	비 고
	학 생		성 인			
	비수기의 평일	성수기(7.1~8.31) , 주말(금, 토) 및 공휴일 전일, 연휴기간	비수기의 평일	성수기(7.1~8.31) , 주말(금, 토) 및 공휴일 전일, 연휴기간		
50평형	200,000	230,000	230,000	250,000	10	운곡1동 운곡2동
32평형	150,000	180,000	180,000	200,000	8	운곡3동 운곡4동
18평형 *1객실 기준	50,000	70,000	70,000	100,000	5	운곡5동 운곡6동
세미나실 *1시간 기준	10,000	20,000	20,000	30,000	80	
족구장·배구장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대공연장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 1박은 당일(입실) 15:00 ~ 다음날(퇴실) 11:00까지 한다.

※ 성수기는 1년 중 7월1일에서 8월31일까지를,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 주말·공휴일은 금요일에서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하고 평일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별표 2]

이용료 감면기준(제9조 관련)

구 분	감 면 율
관내 다자녀 가족(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 단, 사전 예약 시 관련 증빙 자료(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를 제출 하여야 한다.	이용료 50%
고창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참여자로서 관련 부서의 추천을 받은 자	이용료 30%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고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이용료 30%
20인 이상의 단체	이용료 10% → 고창사랑상품권지급
유스호스텔 회원	이용료 10%

- ※ 감면은 1년에 2회, 1일 1객실에 한하여 적용된다. 단, 고창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참여자로서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은 자 및 20인 이상의 단체에 한해서는 제외한다.
- ※ 감면 항목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감면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이용승인) ① (생략) ② 제1항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르고, 군수는 승인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p> <p>[별표 1] <u>유스호스텔 이용요금(제8조 관련)</u></p>	<p>제7조(이용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르고, 군수는 승인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u>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고창군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경우 예외로 한다.</u></p> <p>[별표 1] <u>유스호스텔 이용요금(제8조 관련)</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10%;"></th> <th style="width: 15%;">수 용 인 (명)</th> <th style="width: 60%;">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50평형(단체)</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12</td> <td>운곡1동</td> </tr> <tr> <td>운곡2동</td> </tr> <tr> <td rowspan="2">32평형(단체)</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8</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8</td> <td>운곡3동</td> </tr> <tr> <td>운곡4동</td> </tr> <tr> <td>18평형(별실) *1객실 기준</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5</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5</td> <td>운곡5동</td> </tr> <tr> <td>세미나실</td> <td>운곡6동</td> </tr> <tr> <td>*1시간 기준</td> <td></td> </tr> <tr> <td>족구장·배구장</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무료</td> <td></td> </tr> <tr> <td>무대공연장</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무료</td> <td></td> </tr> <tr> <td colspan="4" style="padding: 5px;"> ※ 1박은 당일(입실) 15:00 ~ 다음날(퇴실) 12:00까지 한다. ※ <u>객실 수용인원 초과 시 1명 당 10,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u> ※ (생략) ※ (생략) </td> </tr> </tbody> </table>	구 분		수 용 인 (명)	비 고	50평형(단체)	(생략)	12	운곡1동	운곡2동	32평형(단체)	8	8	운곡3동	운곡4동	18평형(별실) *1객실 기준	5	5	운곡5동	세미나실	운곡6동	*1시간 기준		족구장·배구장		무료		무대공연장		무료		※ 1박은 당일(입실) 15:00 ~ 다음날(퇴실) 12:00까지 한다. ※ <u>객실 수용인원 초과 시 1명 당 10,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u> ※ (생략) ※ (생략)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10%;"></th> <th style="width: 15%;">수 용 인 (명)</th> <th style="width: 60%;">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50평형</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10</td> <td>운곡1동</td> </tr> <tr> <td>운곡2동</td> </tr> <tr> <td rowspan="2">32평형</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8</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8</td> <td>운곡3동</td> </tr> <tr> <td>운곡4동</td> </tr> <tr> <td>18평형 *1객실 기준</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5</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5</td> <td>운곡5동</td> </tr> <tr> <td>세미나실</td> <td>운곡6동</td> </tr> <tr> <td>*1시간 기준</td> <td></td> </tr> <tr> <td>족구장·배구장</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무료</td> <td></td> </tr> <tr> <td>무대공연장</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무료</td> <td></td> </tr> <tr> <td colspan="4" style="padding: 5px;"> ※ 1박은 당일(입실) 15:00 ~ 다음날(퇴실) 11:00까지 한다. <삭 제>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td> </tr> </tbody> </table>	구 분		수 용 인 (명)	비 고	50평형	(현행과 같음)	10	운곡1동	운곡2동	32평형	8	8	운곡3동	운곡4동	18평형 *1객실 기준	5	5	운곡5동	세미나실	운곡6동	*1시간 기준		족구장·배구장		무료		무대공연장		무료		※ 1박은 당일(입실) 15:00 ~ 다음날(퇴실) 11:00까지 한다. <삭 제>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구 분		수 용 인 (명)	비 고																																																																		
50평형(단체)	(생략)	12	운곡1동																																																																		
			운곡2동																																																																		
32평형(단체)	8	8	운곡3동																																																																		
			운곡4동																																																																		
18평형(별실) *1객실 기준	5	5	운곡5동																																																																		
세미나실			운곡6동																																																																		
*1시간 기준																																																																					
족구장·배구장		무료																																																																			
무대공연장		무료																																																																			
※ 1박은 당일(입실) 15:00 ~ 다음날(퇴실) 12:00까지 한다. ※ <u>객실 수용인원 초과 시 1명 당 10,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u> ※ (생략) ※ (생략)																																																																					
구 분		수 용 인 (명)	비 고																																																																		
50평형	(현행과 같음)	10	운곡1동																																																																		
			운곡2동																																																																		
32평형	8	8	운곡3동																																																																		
			운곡4동																																																																		
18평형 *1객실 기준	5	5	운곡5동																																																																		
세미나실			운곡6동																																																																		
*1시간 기준																																																																					
족구장·배구장		무료																																																																			
무대공연장		무료																																																																			
※ 1박은 당일(입실) 15:00 ~ 다음날(퇴실) 11:00까지 한다. <삭 제>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뒷면 계속>

[별표 2]
이용료 감면기준(제9조 관련)

구 분	감 면 율
관내 다자녀 가족(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 단, 1년 2회 이내로 하고 , 사전 예약 시 관련 증빙자료(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 하여야 한다.	이용료 50%
고창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참여자	이용료 30%
국가유공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고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단, 1실에 한함.	이용료 30%
20인 이상의 단체	이용료 10% → 고창사랑 상품권지급

<신 설>

<뒷면 계속>

[별표 2]
이용료 감면기준(제9조 관련)

구 분	감 면 율
관내 다자녀 가족(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 단, 사전 예약 시 관련 증빙자료(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를 제출 하여야 한다.	이용료 50%
고창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참여자로서 관련 부서의 추천을 받은자	이용료 30%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고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이용료 30%
20인 이상의 단체	이용료 10% → 고창사랑 상품권지급
<u>유스호스텔 회원</u>	<u>이용료 10%</u>

- ※ 감면은 1년에 2회, 1일 1객실에 한하여 적용된다. 단, 고창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참여자로서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은자 및 20인 이상의 단체에 한해서는 제외한다.
- ※ 감면 항목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감면할 수 있다.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3년 5월 10일

고창군 조례 제 2689 호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운영자”란 목욕탕을 직접 운영하는 자로, 목욕탕이 설치되어 있는 읍·면의 읍면장을 말한다. 다만, 위탁 운영을 하고 있을 시엔 수탁자를 말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고창군에 주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고창군에 주 사무소를 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목욕탕은 군수가 관리한다. 다만,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목욕탕

이 소재한 읍면장이 운영한다.

③ 목욕탕은 읍면장이 영업 신고 절차가 완료된 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으로 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운영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공중위생책임자를 지정하고 매년 공중위생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7. (생략)</p> <p><신설></p> <p>제4조(운영 및 주체) 목욕탕은 군수가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 또는 운영의 일부 및 전부를 <u>고창군에 주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u>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신설></p> <p><신설></p> <p>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p>	<p>제2조(정의)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운영자”란 목욕탕을 직접 운영하는 자로, 목욕탕이 설치되어 있는 읍·면의 읍면장을 말한다. 다만, 위탁 운영을 하고 있을 시엔 수탁자를 말한다.</u></p> <p>제4조(운영 및 주체) ① ----- -----. ----- <u>고창군에 주 사무소를 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u></p> <p>② <u>목욕탕은 군수가 관리한다. 다만,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목욕탕이 소재한 읍면장이 운영한다.</u></p> <p>③ <u>목욕탕은 읍면장이 영업 신고 절차가 완료된 후, 운영할 수 있다.</u></p> <p>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p>

③ (생 략)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 5. (생 략)

⑤ (생 략)

제20조(안전관리) (생 략)

<신 설>

③ (현행과 같음)

④ -----
-----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안전관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운영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공중위생책임자를 지정하고 매년 공중위생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경로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3년 5월 10일

고창군 조례 제 2690 호

고창군 경로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고창군 경로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창군 경로 목록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노인복지법」 제4조 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경로 목록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경로 목록 및 이·미용비의 지원 대상(이하 “지원 대상”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매년1월1일) 현재 주민등록상 고창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당해년도 7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제3조(지원내용 등) 경로 목욕 및 이·미용비는 고창관내 목욕 및 이·미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목욕 및 이·미용권(이하 “사용권”이라 한다)을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권의 지원금은 100,000원 이내로 할 수 있고, 지원 대상자별로 고창사랑 상품권 또는 바우처 카드로 지급하며 사용권을 초과하는 목욕 및 이·미용업소 이용료는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
2. 사용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3.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 지원 대상자는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장은 대상자 지원 결정 후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 ① 군수는 사용권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제작하고 연도별로 새롭게 디자인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사용권이 바우처 카드인 경우에는 관리은행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권을 읍·면장에게 배부 또는 필요예산을 재배정하고 읍·면장은 고창사랑 상품권을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③ 지원 대상자가 연령 도래 사유로 인하여 지원기준에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분기부터 지급한다.

제6조(목욕 및 이·미용권 제작 협약 및 목욕 및 이·미용권의 사용) ① 사용권은 군에 소재하는 목욕 및 이·미용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한은 목욕 및 이·미용권을 발급한 당해 연도까지로 한다.

② 사용권은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지원 사업비의 정산 등) “군”과 협약을 맺은 은행은 당해 연도 말에 사업비 잔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잔액 발생의 경우 다음 해 1월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처리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돌려받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제2조에 의거 사용 대상이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사용권의 수불 관리) ① 군수는 사회복지과장과 읍·면장으로 하여금 사용권 수불 및 배부상황을 각각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장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매년 말 읍·면장은 수불 및 배부현황을 정산하여 군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사용권이 고창사랑 상품권인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아이돌봄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3년 5월 10일

고창군 조례 제 2691 호

고창군 아이돌봄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만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봄 지원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

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
2.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
3. 아이돌봄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의 군수가 아이돌봄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부터 보호자 및 아동이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5조(지원기준)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창군 아이돌봄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확인하고,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제7조(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 ① 군수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르는 설치·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① 군수는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의 종사자의 평균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① 군수는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일부를 기관·단체·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에 대해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지도·감독한다.

제13조(표창) 군수는 돌봄노동을 존중하고 격려하기 위해 아이돌보미를 선정하여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고창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

구분	소득유형 (중위소득)	본인부담금 지원율(군비)	비고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가형	50%	
	나형	50%	
	다형	50%	
	라형	50%	

※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에 의거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한하여
지원

※ 정부지원 기준 및 시간을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따름

[별지 제1호서식]

고창군 아이돌봄지원 신청서						
신청인 (보호자)	성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주소					
서비스 이용 대상자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동거여부	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	
					시간제/종일제 가형 <input type="checkbox"/> 나형 <input type="checkbox"/> 다형 <input type="checkbox"/> 라형 <input type="checkbox"/>	
					시간제/종일제 가형 <input type="checkbox"/> 나형 <input type="checkbox"/> 다형 <input type="checkbox"/> 라형 <input type="checkbox"/>	
					시간제/종일제 가형 <input type="checkbox"/> 나형 <input type="checkbox"/> 다형 <input type="checkbox"/> 라형 <input type="checkbox"/>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양육공백 유형	맞벌이 <input type="checkbox"/> 다자녀 <input type="checkbox"/> 취업 한부모 <input type="checkbox"/> 장애부모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p>○ 신청자 및 아동이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p> <p>※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p>						
<p>『고창군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따라 고창군 아이돌봄 지원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 text-align: center;">고창군수 귀하</p>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고창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p>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3년 5월 10일

고창군 조례 제 2692 호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유스호스텔 사용요금(제19조 관련)

구 분		본 관 (온돌)		신 관 (침대)		비 고
		6인실	8인실	2인실	1인실	
객 실 사용료	주 중	54,000	72,000	54,000	36,000	10%할인
	주 말 (금,토,공휴전일, 연휴기간)	60,000	80,000	60,000	40,000	
대 강 당 사용료등 (4시간이하)		○대강당등사용료: 150,000원(매시간 초과마다 10,000원) ○세미나실: 100,000원(매시간 초과마다 6,000원) ○회 의 실: 50,000원(매시간 초과마다 3,000원)				
공동취사장		○무 료				
그밖의 사항		○단체는 10% 할인(20인 이상, 객실사용료에 한함) ○유스호스텔 회원은 사용요금의 10% 할인 한다. (객실 사용료에 한함) ○1박은 당일 15:00~ 다음날11:00까지 한다. (초과 시는 1박으로 간주) ○식대는 청소년과 성인을 구분하여 청소년 6,000원 성인 7,000원으로 하고 사용자의 식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유스호스텔 사용요금(제19조 관련)							유스호스텔 사용요금(제19조 관련)						
구 분		본 관		신 관		비 고	구 분		본 관 (온돌)		신 관 (침대)		비 고
		6인실	8인실	6인실	2인실				6인실	8인실	2인실	1인실	
객 실 사 용 료	일 반	60,000	80,000	60,000	40,000		객 실 사 용 료	주 중	54,000	72,000	54,000	36,000	10% 할인
	비수기 (12월~3월 일요일~목요일)	48,000	64,000	48,000	32,000	20% 할인		주 말 (금,토,공휴전 일,연휴기간)	60,000	80,000	60,000	40,000	
대 강 당 사용료등 (4시간이하)		○대강당등사용료: 150,000원(매시간 초과마다 10,000원) ○세미나실: 100,000원(매시간 초과마다 6,000원) ○회 의 실: 50,000원(매시간 초과마다 3,000원)					대 강 당 사용료등 (4시간이하)		○대강당등사용료: 150,000원(매시간 초과마다 10,000원) ○세미나실: 100,000원(매시간 초과마다 6,000원) ○회 의 실: 50,000원(매시간 초과마다 3,000원)				
공동취사장		○1인당 500원씩으로 하며 인원은 객실 사용 인원수로 적용 한다.					공동취사장		○ 삭 제				
그밖의 사항		○단체는 10% 할인(20인 이상, 객실사용료에 한함) ○유스호스텔 회원은 사용요금의 20% 할인 한다. (객실 사용료에 한함) ○1박은 당일 15:00~ 다음날12:00까지 한다. (초과 시는 1박으로 간주) ○식대는 청소년과 성인을 구분하여 청소년 5,000원 성인 6,000원으로 하고 사용자의 식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비수기는 12월~3월 중 일요일~목요일까지 사용요금 20% 할인 한다. (객실사용료에 한함)					그밖의 사항		○단체는 10% 할인(20인 이상, 객실사용료에 한함) ○유스호스텔 회원은 사용요금의 10% 할인 한다. (객실 사용료에 한함) ○1박은 당일 15:00~ 다음날 11:00 까지 한다. (초과 시는 1박으로 간주) ○식대는 청소년과 성인을 구분하여 청소년 6,000원 성인 7,000원 으로 하고 사용자의 식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삭 제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3년 5월 10일

고창군 조례 제 2693 호

고창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의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
추진을 통해 농가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주요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
목에 따른 농산물 중 고창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보장기금 운영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농산물을 말한다.
3. “생산비”란 농작물의 생산에 투입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을 고려한 직접생산비로써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단, 생산비 중 각종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4. “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되는 해당연도 재배 품목의 전국 주요 도매시장 기준 평균가격을 말한다.

5. “최저가격”이란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가격을 말한다.

6. “차액”이란 최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해 고창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보장기금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 2027년까지 3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이 유지되도록 필요시 추가 전입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하며, 필요한 경우 5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농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차액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야 한다.

-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 2.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 3. 해당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 공무원을 둔다.

- 1. 기금운용관 : 업무 부서장
- 2. 기금출납원 : 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어촌산업국장, 기획예산실장, 농촌활력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NH농협은행고창군지부장, 지역농협운영협의회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 1. 고창군 의회 의원

- 2. 관내 농협 조합장
- 3. 농업관련 및 품목별 단체 대표
- 4. 기타 농업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금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2. 최저가격 보장 대상품목 결정
- 3. 최저가격 결정
- 4.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및 결정
-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품위손상, 장기불참,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제9조에 따른 기능 수행을 위하여 매년 1회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대상품목) 대상품목은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고구마, 수박, 배, 배추, 고추, 양파, 무로 한다. 다만, 제9조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확대할 수 있다.

제16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주요 농산물을 생산하여 통합마케팅 조직(또는 참여조직)을 통하여 계통출하하는 농업인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

- 1. 신청일 기준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2. 고창군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
 - 3. 품목당 1,000㎡ 이상(시설하우스의 경우 330㎡이상) 재배하고 있는 자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상한면적은 전체 품목을 합산하여 최대 10,000㎡

(시설하우스는 2,700m²) 이내로 한다.

제17조(최저가격 결정) ① 최저가격은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생산비 관련자료, 도매시장가격의 평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최저가격은 품목별 특성에 따라 단위면적당 또는 중량을 기준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저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상 농산물의 재배·생산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농업수입보장보험금 등 유사한 형태의 보전금이나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단, 채소류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기준가격의 10%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조사연구 및 재정지원) ① 위원회는 생산비 및 최저가격 결정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단체 등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연구를 의뢰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최저가격 등 고시) 군수는 결정된 최저가격 등을 군보에 고시하고 군 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재하여야 한다.

제20조(지급기준) ① 차액 지급기준은 대상품목 농산물의 주 출하시기에 도매시장 평균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지급한다. 단, 지원 총액이 당해연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지급대상별로 일률적 감액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② 통합마케팅 조직(또는 참여조직)과 계통출하 계약을 체결한 농가가 약정된 농산물을 계약내용에 따라 출하하지 않고 농가 임의로 처분한 때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21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농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차액을 지원받았을 때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제1항에 따른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3년 5월 10일

고창군 조례 제 2694 호

고창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고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
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고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고창군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고창군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 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 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고창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10명 이내 인원의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한다.

-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 나.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
 -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고창군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 (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고창군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④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고창군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 ① 고창군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고창군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 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5조(교육·훈련) ① 고창군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 대책 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전라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고창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창군 지역 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창군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평가단원은 고창군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 할 경우 제4조제1항에서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 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④ 고창군 지역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⑤ 고창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평가 결과 표지를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⑥ 그 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고창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라북도 또는 인근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고창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전라북도 및 다른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① 고창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고창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경비지원) 고창군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 앞 >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

성 명 : 사 진

소 속 :

주 소 :

위 사람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함.

고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

120mm×90mm

< 뒤 >

본 단원증을 분실, 습득하신 분께서는 고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Tel : 063-560-267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120mm×90mm

[별지 제3호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위험

이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을 금함.

평가일시 :
 위험요소 :
 점검의견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결과입니다.

고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063-560-2673)

300mm × 420mm(빨강)

[별지 제4호서식]

위험도 평가 결과

사용 시 유의

이 시설물의 거주 및 출입 시 유의바람

- 평가일시 :
- 주의사항 :
- 점검의견 :

※본 위험도 평가결과는 평가시의 상태만을 점검한 결과임

「지진·화재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결과입니다.

고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063-560-2673)

300mm × 420mm(노랑)

[별지 제5호서식]

위험도 평가 결과

사용가능

이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이 가능함.

□ 평가일시 :
□ 평가의견 :

※본 위험도 평가결과는 평가시의 상태만을 점검한 결과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결과입니다.

고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063-560-2673]

300mm × 420mm(초록)

[별지 제6호서식]

위험도 평가 결과

추가점검 예정

이 시설물의 거주 및 출입 시 유의바람.

평가일시 :
 주의사항 :

※ 본 위험도 평가결과는 평가시의 상태만을 점검한 결과이며,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결과입니다.

고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063-560-2673]

300mm × 420mm(주황)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3년 5월 10일

고창군 조례 제 2695 호

고창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고창군 인구감소
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은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제6조에 따른 고창군 인구정책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

제3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창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청년·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인구를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중장년 정착 지원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제4조(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① 영 제13조제2호에서 “조례에

서 정하는 범위”란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50 이하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한 절차·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5조(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 1. 지역의 활력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노후·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인센티브 지급) ① 군수는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인구감소대응 정책 추진에 공로가 있는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과 근무평정시 우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신재효판소리공원 운영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3년 5월 10일

고창군 조례 제 2696 호

고창군 신재효판소리공원 운영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재효판소리공원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신재효판소리공원(이하 “공원” 이라 한다)은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 당산로 148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원 시설물(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세미나실, 체험실, 득음실, 야외
마당, 기타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1호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시설 사용을 위한 요금을 말한다.

제4조(업무) 공원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

한다.

- 1. 국악 및 문화예술의 교육·체험·전수 등에 관한 사항
- 2. 각종 공연 및 행사를 위한 장소
- 3. 판소리 중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시설 사용은 고창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가 우선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수 있다.

- 1.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영리 및 포교를 위한 행사 등 공공목적에 부적합한 경우

제7조(사용신청)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 1. 고창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2. 고창군이 후원하는 문화예술 행사
- 3. 전통 국악을 위한 시설 사용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2. 고창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물 등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5일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취소하는 경우 : 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 3일전에 사용자가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의 50% 공제 후 반환
5. 사용예정일 1일 전 또는 사용당일에 사용자가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의 80% 공제 후 반환

② 제1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시설의 보호 관리에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기간 중 별도의 설비를 설치할 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불이익 처분내용을 통보한 후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때는 이를 임의 처분할 수 있다.

제11조(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 제12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원을 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 위탁업무, 위탁조건,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책임 한계 및 그 밖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공원을 위탁받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탁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공원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⑤ 수탁자는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공원 운영관리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공원 운영관리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③ 수탁자가 공원 부지 내에 시설을 신축, 증축,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고창군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원을 재 위탁 하거나 대리 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변상조치)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 또는 사용자가 사용 시설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감독)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공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제16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1. 수탁자가 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을 위반한 때
- 2. 수탁자가 운영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 3. 공익상 위탁 운영관리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위탁이 취소 되었을 때에는 공원 운영관리에 사용하던 모든 시설물 및 비품은 고창군에 귀속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고창군 신재효판소리공원 사용료(제7조 제2항 관련)

(단위: 원)

시설명	단 위		사용료	비 고
체험실	1회	평일	10,000원	○ 1회란 오전·오후·야간 중 하나를 지정 ○ 사용시간 구분 · 오전 : 09:00 ~ 13:00 · 오후 : 13:00 ~ 18:00 · 야간 : 18:00 ~ 22:00
		휴일	15,000원	
세미나실	1회	평일	15,000원	
		휴일	20,000원	
야외마당	1일 (09:00 ~ 22:00)		15,000원	

[별지 제1호 서식] (뒷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p>「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효판소리공원 사용자 확인 <p><input type="checkbox"/>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주소, 연락처 <p>※ 개인정보는 “신재효판소리공원 사용(변경)신청서” 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p> <p><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일로부터 3년 <p><input type="checkbox"/>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p>※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p>	
<p>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여부</p>	<p>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p>신청인 : _____ (인)</p>	

[별지 제2호 서식] (뒷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신재효판소리공원 위탁 운영관리자 확인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 개인정보는 “고창군 신재효판소리공원 운영관리 위탁신청서” 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일로부터 5년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p>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여부</p>	<p>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	--

신청인 : (인)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3년 5월 10일

고창군 조례 제 2697 호

고창군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창군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사용자)”를 “(사용자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자로”를 “경우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사람의 연고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민 등록을”을 “주민등록지를”로, “사람의 연고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고창군 관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
- 4. 고창군에 주민등록지를 둔 사람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 5. 기존 안치된 유골의 배우자
- 6.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사용자) ①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u>자는</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자로</u>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창군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사망한 <u>사람의 연고자</u> 2. 고창군에 <u>주민등록을</u> 두고 사망한 <u>사람의 연고자</u> 3. 고창군에 <u>개장한 유·무연고 유골을 안치하고자 하는 자</u> 4. 사망한 <u>사람의 연고자 중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u> <p><신 설> <신 설></p> <p>③ (생 략)</p>	<p>제4조(사용자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사람은</u> ----- ----- <u>경우로</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u>사람</u> 2. ----- <u>주민등록지를</u> ----- - <u>사람</u> 3. <u>고창군 관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u> 4. <u>고창군에 주민등록지를 둔 사람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u> 5. <u>기존 안치된 유골의 배우자</u> 6. <u>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u> <p>③ (현행과 같음)</p>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자연장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3년 5월 10일

고창군 조례 제 2698 호

고창군 자연장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창군 자연장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으로”를 “경우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람의 연고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민등록을”을 “주민등록지를”로, “사람의 연고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고창군에 주민등록지를 둔 사람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 4. 고창군 관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
- 5. 기존 안치된 유골의 배우자
- 6.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자연장지의 사용)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사람으로</u> 한다.</p> <p>1. 고창군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사망한 <u>사람의 연고자</u></p> <p>2. 고창군에 <u>주민등록을</u> 두고 사망한 <u>사람의 연고자</u></p> <p>3.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중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p> <p>4. 고창군 관내에서 개장한 유골의 <u>연고자</u></p> <p><신 설></p> <p><신 설></p> <p>③ (생략)</p>	<p>제5조(자연장지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경우로</u> ----.</p> <p>1. ----- <u>사람</u></p> <p>2. ----- <u>주민등록지를</u> ----- -- <u>사람</u></p> <p>3. <u>고창군에 주민등록지를 둔 사람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u></p> <p>4. <u>고창군 관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u></p> <p>5. <u>기존 안치된 유골의 배우자</u></p> <p>6. <u>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u></p> <p>③ (현행과 같음)</p>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3년 5월 10일

고창군 조례 제 2699 호

고창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창군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항부터 제2항까지”를 “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허위의”를 “거짓”으로 한다.

-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고창군 공용차량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1”로 본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국내여비 지급표(제4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자동차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생략)</p> <p>②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p>	<p>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 ----- ----- -----.</p>
<p>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p> <p>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p> <p>②(생략)</p> <p>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p>	<p>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p> <p>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p> <p>②(현행과 같음)</p> <p>1. 거짓 출장신청 ----- -----</p>
<p>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1. ~ 3. (생략)</p> <p>4. 제18조제1항 단서 중 “<u>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u>”는 “<u>지방자치단체공용 차량관리규칙 제3조</u>”로 “<u>동규정 [별표 1]</u>”은 “<u>같은 규칙 [별표 1]</u>”로 본다.</p>	<p>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제18조제1항 단서 중 “<u>「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u>”는 “<u>「고창군 공용차량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1</u>”로 본다.</p>

4의2. ~ 8. (생략)

[별표]

국내여비 지급표(제4조 관련)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 1 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 2 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비고 : 1. ~ 4.(생략)

4의2. ~ 8. (현행과 같음)

[별표]

국내여비 지급표(제4조 관련)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 1 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 2 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u>100,000</u> 광역시 <u>80,000</u> 그 밖의 지역은 <u>70,000</u>)

비고 : 1. ~ 4.(현행과 같음)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3년 5월 10일

고창군 조례 제 2700 호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 허가를 신청할 때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를 “고창군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조 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이용간판 중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간판

제3조제1항 중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접수처리한 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허가 및”을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으로 한다.

제3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
2.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영 제10조에 따라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

제3조제3항 중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접수처리한 광고물등의”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로, “그 허가”를 “허가”로,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릴 수 있다.”를 “표시기간의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호,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

2.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영 제4조제1항 제1호 및 제5조, 제1항제1호”를 “영 제4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제3조 및 제23조의”를 “제11조 및 제34조의”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를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를 “우대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10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제2항(중전의 제1항) 중 “부군수가”를 “옥외광고물 담당 국장이”로,

“광고물등”을 “옥외광고물”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심의위원회”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을 “임명”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하며,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나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소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물 담당 과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다.

- ② 그 밖에 소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소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것은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의3(재심의) 제13조와 제13조의2에 따른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처리 기간은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4조제4항 중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를 “심의를 위하여”로 한다.

제15조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

제15조3호 중 “「자격기본법」 제17조”를 “「자격기본법」 제19조”로, “기술 자격 을”을 “기술자격을”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 설 및 장비”을 “시설 및 장비”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위탁 할 수 있다”를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안전 점검”을 “안전점검”으로 한다.

제19조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위탁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 기간 내에 위탁 지정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옥외광고 시설물 관리에 대한 위탁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 지정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 지정서(별지 제17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게시할 광고물의 신고 대행 및 신고된 광고물의 부착 및 철거 대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수탁자는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료 부과기준(별

표 8)에 따라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협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도·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20조제3항 중 “관계자가”를 “영 제40조제1항의 관리자 등이”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을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옥외광고업”을 각각 “옥외광고사업”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4항 중 “옥외광고업”을 각각 “옥외광고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비용의 일부를”을 “비용을”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옥외광고업”을 각각 “옥외광고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수료자에게교육수료필증”을 “수료자에게 교육수료필증”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착오 등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소인이 찍히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제2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광고물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의 표출 및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할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 광고를 표출하는 경우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하지 않을 것. 다만, 다른 표출 신청이 없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 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

첨, 공개추첨, 접수 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군수는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표출하지 않을 것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공고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영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않도록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별표 1부터 7까지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1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제16호부터 제1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하

구비서류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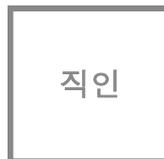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별지 제5호서식]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	-----	-----	----	-----

< 앞 쪽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고 창 군

< 뒤 쪽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격 기 한(20 ~ 20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
 에 따 른 안 전 점 검 검 사 원 임 을 증
 명 함

년 월 일

고 창 군 수 직인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신규 []연장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합격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뒤 쪽)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별지 제9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청구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

인수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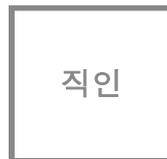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	성명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9조 및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제 호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교육계획	일시	
	장소	
불참사유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	------------------------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0조 및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고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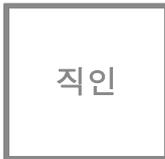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0조 및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별지 제16호서식]

옥외광고시설물 관리 위탁 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대표자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시설물 관리 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자(기관단체) 자기소개서 1부.	수수료
	2. 인력 및 보유시설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옥외광고시설물 관리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대표자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년 월)
------	----------------------------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위탁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직인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1조 관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0㎡ 이하	20만원
- 2.1㎡ 이상 3.0㎡ 이하	25만원
- 3.1㎡ 이상 4.0㎡ 이하	30만원
- 4.1㎡ 이상 5.0㎡ 미만	40만원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0만원
- 6.1㎡ 이상 7.0㎡ 이하	60만원
- 7.1㎡ 이상 8.0㎡ 이하	70만원
- 8.1㎡ 이상 9.0㎡ 이하	80만원
- 9.1㎡ 이상 10.0㎡ 미만	90만원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100만원
- 12.1㎡ 이상 14.0㎡ 이하	120만원
- 14.1㎡ 이상 16.0㎡ 이하	140만원
- 16.1㎡ 이상 18.0㎡ 이하	160만원
- 18.1㎡ 이상 20.0㎡ 미만	180만원
4) 면적 20㎡ 이상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
	원을 더한 금액 미만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20만원
- 2.1㎡ 이상 3.0㎡ 이하	25만원
- 3.1㎡ 이상 4.0㎡ 이하	30만원
- 4.1㎡ 이상 5.0㎡ 미만	40만원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0만원
- 6.1㎡ 이상 7.0㎡ 이하	60만원
- 7.1㎡ 이상 8.0㎡ 이하	70만원

- 8.1㎡ 이상 9.0㎡ 이하	80만원
- 9.1㎡ 이상 10.0㎡ 미만	90만원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100만원
- 12.1㎡ 이상 14.0㎡ 이하	120만원
- 14.1㎡ 이상 16.0㎡ 이하	140만원
- 16.1㎡ 이상 18.0㎡ 이하	160만원
- 18.1㎡ 이상 20.0㎡ 미만	180만원
4) 연면적 20㎡ 이상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1) 연면적 3㎡ 미만	
- 0.5㎡ 이하	30만원
- 0.6㎡ 이상 1.0㎡ 이하	33만원
- 1.1㎡ 이상 2.0㎡ 이하	38만원
- 2.1㎡ 이상 3.0㎡ 미만	45만원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5㎡ 이하	50만원
- 3.6㎡ 이상 4.0㎡ 이하	60만원
- 4.1㎡ 이상 4.5㎡ 이하	80만원
- 4.6㎡ 이상 5.0㎡ 미만	90만원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100만원
- 6.1㎡ 이상 7.0㎡ 이하	120만원
- 7.1㎡ 이상 8.0㎡ 이하	140만원
- 8.1㎡ 이상 9.0㎡ 이하	160만원
- 9.1㎡ 이상 10.0㎡ 미만	180만원
4) 연면적 10㎡ 이상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30만원
- 2.1㎡ 이상 3.0㎡ 이하	33만원
- 3.1㎡ 이상 4.0㎡ 이하	38만원
- 4.1㎡ 이상 5.0㎡ 미만	45만원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0만원
- 6.1㎡ 이상 7.0㎡ 이하	60만원
- 7.1㎡ 이상 8.0㎡ 이하	70만원
- 8.1㎡ 이상 9.0㎡ 이하	80만원
- 9.1㎡ 이상 10.0㎡ 미만	90만원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1㎡ 이상 12.0㎡ 이하	100만원
- 12.1㎡ 이상 14.0㎡ 이하	120만원
- 14.1㎡ 이상 16.0㎡ 이하	140만원
- 16.1㎡ 이상 18.0㎡ 이하	160만원
- 18.1㎡ 이상 20.0㎡ 미만	180만원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0㎡ 이상 25.0㎡ 이하	200만원
- 21.1㎡ 이상 30.0㎡ 이하	230만원
- 30.1㎡ 이상 35.0㎡ 이하	240만원
- 35.1㎡ 이상 40.0㎡ 이하	250만원
- 40.1㎡ 이상 45.0㎡ 이하	260만원
- 45.1㎡ 이상 50.0㎡ 미만	280만원
5) 연면적 50㎡ 이상	300만원 +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 이하	30만원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40만원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50만원
- 연면적 15㎡ 이상 20㎡ 이하	60만원
- 연면적 21㎡ 이상	60만원 +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30만원
- 애드벌룬(공) 2개	50만원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7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	
- 연면적 5㎡ 이하	30만원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40만원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50만원
- 연면적 15㎡ 이상 20㎡ 이하	60만원
- 연면적 21㎡ 이상	70만원+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교통안내소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3)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4) 도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연면적 10㎡ 이하	150만원
- 연면적 11㎡ 이상	150만원+연면적 1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 1.0㎡ 이하	10만원

- 1.1㎡ 이상 2.0㎡ 이하	20만원
- 2.1㎡ 이상 3.0㎡ 미만	29만원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4.0㎡ 이하	35만원
- 4.1㎡ 이상 5.0㎡ 미만	45만원
다) 연면적 5㎡ 이상	50만원+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3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개정 시
행정처분 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	별도 정함	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공고함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5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가. 벽면이용간판	
1) 일반 벽면이용 간판(2)를 제외한 경우	
- 면적 6㎡ 이하	2,000원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2) 타사광고	
- 면적 6㎡ 이하	24,000원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나. 돌출간판	
- 연면적 6㎡ 이하	10,000원
- 연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500원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개당)	3,000원
다. 공연간판	벽면이용간판 1)과 같음
라.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30,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12,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바.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	10,000원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2,000원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4,500원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5,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400,000원
- 비행기·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선박	10,000원
-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3,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1개)	3,000원
타. 현수막	
1) 현수막	
- 10㎡ 이하	3,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5,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3) 가로등 현수기(개소당)	2,000원

과. 벽보(50매당)	2,500원
하. 전단(1,000매당)	2,500원
거.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	해당 종류의 광고물등 수수료의 2배 적용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별표 4]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5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1,600원
다. 옥상간판	-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1,000원 38,000원 1,3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마. 애드벌룬(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1,000원 600원
아. 그밖의 안점점검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별표 5]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25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나.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를 말한다)은 포함한다.

다.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산정한다.

라.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마.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2)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3)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바.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와 같은 목 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

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하도록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사. 제2호가목·라목·마목을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아. 사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사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자.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차. 제2호가목1)라)·제2호가목2)라)의 소수점 계산에서 0.0㎡ 초과 0.5㎡ 이하는 0.5㎡로 계산한다.

카.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장당 또는 개당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하여 부과하며, 여러장 또는 여러개의 불법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합계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또는 법 제5조 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1) 입간판							
가) 연면적 1㎡ 이하		개당	12만원	개당	16만원	개당	21만원
나) 연면적 1㎡ 초과 2㎡ 이하		개당	35만원	개당	60만원	개당	90만원
다) 연면적 2㎡ 초과 3㎡ 이하		개당	67만원	개당	91만원	개당	126만원
라) 연면적 3㎡ 초과하는		개당	67만원+ 연면적	개당	91만원+ 연면적	개당	126만원+ 연면적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2) 현수막		3㎡를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7만원을 더한금액		3㎡를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9만원을 더한 금액		3㎡를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2만원을 더한 금액	
가) 면적 3㎡ 이하	법 제20조 제1항제1호의 3	개당	12만원	개당	16만원	개당	21만원
나) 면적 3㎡ 초과 5㎡ 이하		개당	35만원	개당	60만원	개당	90만원
다) 면적 5㎡ 초과 10㎡ 이하		개당	67만원	개당	91만원	개당	126만원
라) 면적 10㎡ 초과		개당	67만원+ 연면적 3㎡를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7만원을 더한금액	개당	91만원+ 연면적 3㎡를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9만원을 더한 금액	개당	126만원+ 연면적 3㎡를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2만원을 더한 금액
3) 벽보		장당	17천원	장당	27천원	장당	42천원
가) 10장 이하		장당	22천원	장당	32천원	장당	47천원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장당	33천원	장당	43천원	장당	58천원
다) 20장 초과 30장 이하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	장당	65천원
라) 30장 초과		장당	8천원	장당	10천원	장당	13천원
가) 10장 이하		장당	13천원	장당	18천원	장당	24천원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장당	17천원	장당	24천원	장당	34천원	
다) 20장 초과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 일 이하인 경우							

<p>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p> <p>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p> <p>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p>	<p>법 제20조 제1항제2호</p>	<p>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p> <p>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p>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p>1) 30일 이상 90일 미만</p> <p>2) 90일 이상 180일 미만</p> <p>3) 180일 이상 1년 미만</p> <p>4) 1년 이상</p>		<p>57만원</p> <p>107만원</p> <p>207만원</p> <p>390만원</p>		
<p>라.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p>	<p>법 제20조 제1항제5호</p>	<p>80만원</p>	<p>200만원</p>	<p>500만원</p>
<p>마.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p>	<p>법 제20조 제2항</p>	<p>25만원</p>	<p>45만원</p>	<p>100만원</p>

[별표 7]

특구 홍보용 광고물 표시 현황(제6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	개수 (면수)	주 소	이격거리
지주이용간판	2개 4면이내	특구지역 내	500미터 이상
선 전 탑	2개 8면이내	특구지역 내	500미터 이상

[별표 8]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제19조제6항 관련)

시설물	현수막		비고
	사용료	신고 수수료	
현수막 지 정 계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수막(7일 표시) 8,800원(부가세 포함) ▪ 현수막(14일 표시) 19,000원(부가세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수막 - 3,000원/장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u></p>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 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 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p>	<p style="text-align: center;"><u>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 이라 한다)의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 라 한다) 허가를 신청할 때</p>

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 4. (생략)
5. (생략)
6. (생략)
7. 그 밖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 ② (생략)
 -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신설>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는 제외한다.

1. ~ 4. (현행과 같음)
6. (현행 제5호와 같음)
5. (현행 제6호와 같음)
7. -----
----- 고창군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

- ② (현행과 같음)
- ③ -----

-----.
1. (현행과 같음)
2.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2. (생략)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접수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 설>

② (생략)

③ 군수는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접수 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

벽면이용간판 중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간판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

-----.

1.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

2.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영 제10조에 따라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릴 수 있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 3. (생략)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

허가 표시기간의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

- 1.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
- 2.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 3. (현행과 같음)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

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
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5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이용 간
판

2. ~ 6. (생략)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
의 특례) ① 군수는 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특
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
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
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
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7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생략)

제8조(자율관리협정) (생략)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생
략)

-----.

1. 영 제4조제1항제1호-----

2. ~ 6. (현행과 같음)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
의 특례) ① -----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
다)-----

제11조 및 제34조의-----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현행과 같음)

제8조(자율관리협정) (현행과 같음)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현행
과 같음)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
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략)
-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
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
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 7.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제10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군
수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
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
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
한다.

1. ~ 5. (생략)

제11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생략)

②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
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
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
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② -----

-----.

- 1. (현행과 같음)
- 2. -----

----- 성별을 고려하여 구
성한다.

3. ~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

-----정비시범
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
다.

1. ~ 5. (현행과 같음)

제11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우대방안
을 마련할 수 있다.

있다.

③ (생략)

제12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생략)

제1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① <신설>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영 제32조
제9항에 따른 간사는 광고물등 업
무 팀장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
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
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자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
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후단
신설>

<단서 신설>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현행과 같음)

제1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10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 옥외광고물 담당 국장이

----- 옥외광고물 -----.

③ ----- 심의위원회

임명 -----
-.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하며,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

1. ~ 3.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정성별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2.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나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③ 영 제3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1 미만이어야 한다.
-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있다.

<삭 제>

제13조의2(소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물 담당 과장이 된다.

<신 설>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그 밖에 소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③ 소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것은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의3(재심의) 제13조와 제13조의2에 따른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처리기간은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 ③ (생략)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생략)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 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생략)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생략)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심의를 위하여 -----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

-----.

1. (현행과 같음)

2.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

3. ----- 「자격기본법」 제19조-----

- 기술자격을 -----

4. (현행과 같음)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17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8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생략)

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생략)

②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시설 및 장비

1. ~ 4. (현행과 같음)

제17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 위탁 할 수 있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 안전 점검

제18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현행과 같음)

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하는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경우에는 위탁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위탁 지정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옥외광고시설물 관리에 대한 위탁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 지정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 지정서(별지 제17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게시할 광고물의 신고 대행 및 신고된 광고물의 부착 및 철거 대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수탁자는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료 부과기준(별표 8)에 따라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제2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② (생략)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22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협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도·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2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영 제40조제1항의 관리자 등이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관리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23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등) ① -----
옥외광고사업자가 옥외광고사업-

 -----.

② ----- 옥
외광고사업자-----

 -----.

1. (현행과 같음)
2. ----- 옥외광고사업

3. ----- 옥외광고사업

제23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
 ----- 옥외광고사업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옥외광고사업-----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생략)

⑥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생략)

1. ~ 4. (생략)

제24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 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

⑤ (현행과 같음)

⑥ ----- 비용을 -----

-----.

⑦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제24조(교육의 위탁 등) ① -----
----- 옥외광고사업 -----

-----.

② ----- 옥외광고사업 -----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⑤ 교육위탁지정자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 수료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 ⑧ (생략)

제25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후단 신설>

<신설>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수료자에게 교육수료필증 -----
-.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5조(수수료) ① -----
-----.

1.·2. (현행과 같음)

3. ----- 옥외광고사업 -----.

② -----

-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착오 등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소인이 찍히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 1. (생략)
- 2. (생략)

<신 설>

③ -----

-----.

- 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광고물
- 2. (현행 제1호와 같음)
-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28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의 표출 및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할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

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 광고를 표출하는 경우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하지 않을 것.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 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 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군수는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표출하지 않을 것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공고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영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않도록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3년 5월 10일

고창군 조례 제 2701 호

고창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창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과 관련 [별표2] 고창군의회 의원 여비지급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고창군의회 의원 여비지급기준(제3조)

1.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단위: 원)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비고: 1.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 제1호를 준용한다.

2.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퇴근의 곤란한 원격(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3. 도서지역의 경우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2] <u>고창군의회 의원 여비지급기준(제3조)</u>							[별표2] <u>고창군의회 의원 여비지급기준(제3조)</u>						
1. 국내여비 지급지급표							1. 국내여비 지급지급표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3년 5월 10일

고창군 조례 제 2702 호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와 관련 [별표1] 국내여비 지급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국내여비 지급표(제3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자동차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율로 지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1] 국내여비 지급표(제3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15%;">철도 운임</th> <th style="width: 15%;">선박 운임</th> <th style="width: 15%;">항공 운임</th> <th style="width: 15%;">자동차 운임</th> <th style="width: 20%;">숙박비 (1박당)</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제 1 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실비 (특실)</td> <td style="text-align: center;">실비 (1등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실비</td> <td style="text-align: center;">실비</td> <td style="text-align: center;">실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제 2 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실비 (일반실)</td> <td style="text-align: center;">실비 (2등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실비</td> <td style="text-align: center;">실비</td> <td style="text-align: center;">실비 (상한액: 서울특별 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td> </tr> </tbody> </table>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 1 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 2 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 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p>[별표1] 국내여비 지급표(제3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15%;">철도 운임</th> <th style="width: 15%;">선박 운임</th> <th style="width: 15%;">항공 운임</th> <th style="width: 15%;">자동차 운임</th> <th style="width: 20%;">숙박비 (1박당)</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제 1 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실비 (특실)</td> <td style="text-align: center;">실비 (1등 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실비</td> <td style="text-align: center;">실비</td> <td style="text-align: center;">실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제 2 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실비 (일반실)</td> <td style="text-align: center;">실비 (2등 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실비</td> <td style="text-align: center;">실비</td> <td style="text-align: center;">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u>100,000</u> 광역시 <u>80,000</u> 그 밖의 지역은 <u>70,000</u>)</td> </tr> </tbody> </table>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 1 호	실비 (특실)	실비 (1등 급)	실비	실비	실비	제 2 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 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u>100,000</u> 광역시 <u>80,000</u> 그 밖의 지역은 <u>70,000</u>)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 1 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 2 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 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 1 호	실비 (특실)	실비 (1등 급)	실비	실비	실비																																										
제 2 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 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u>100,000</u> 광역시 <u>80,000</u> 그 밖의 지역은 <u>70,000</u>)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3년 5월 10일

고창군 조례 제 2703 호

고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군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체육시설 업
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변, 공터 등에 설치하고 관리
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및 관리주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장이 된다. 다만, 관리부서가 없는 야외운동기구는 해당부지 재산관리관이 관리부서의장이 된다.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군민이 이용하는 공원이나 쉼터 등 공공장소
2.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기존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설치 및 관리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한다.

1.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충분한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2.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우선으로 한다.
3. 야외운동기구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평탄한 곳에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야외운동기구는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기구 간의 적정거리를 두어 설치해야 한다.

5.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총괄부서와 사전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신속하게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안내문 게시)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안내문은 군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에 의해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기구의 고장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상·하반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밀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제10조(관리대장 작성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설치·철거)를 총괄부서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장이 이 조례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 하여야 한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영조물 배상공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이용자 또는 제3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파손한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이용자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안내문(제8조 관련)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기구명	
관리부서	
연락처	
고 창 군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제10조 관련)

관리번호	0000과 -
------	---------

시 설 명							
위 치	(필요시 위치도 첨부)						
설치면적	㎡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사 업 비	천원(국비 천원, 도비 천원, 시비 천원)						
설 치 현 황	위 치 도			전경사진			
	번호	기구명	관리번호	수량	단가(천원)	금액(천원)	설치년월

(뒷면)

	점검일시	점 검 자		점검내용
		직급	성명	
관 리 현 황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3년 5월 10일

고창군 조례 제 2704 호

고창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도로법」 제10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로에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등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주택가 골목, 농촌자연마을 등에 방법 및 야간통행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등을 말한다.
3. “유지관리”란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일상정비하거나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거나 이설 또는 철거하여 당초 건설된 상태로 보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설치 등) ① 조명시설은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다.

② 도로개설, 택지조성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지역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은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설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창군과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기준) 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조명시설의 시공은 관련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전문업체가 시행한다.

2. 소요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품을 사용한다.

3. 가로등은 교통량 및 등의 밝기에 따라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하고 도로나 교량의 한쪽 또는 양쪽에 설치한다.

4. 보안등은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5. 조명시설에 설치하는 등의 높이는 도로 폭 및 조도에 따라 설치(다만, 가로등은 지상으로부터 8미터 이상, 보안등은 지상으로부터 5미터 이상으로 설치)한다.

6. 점멸장치는 지상 2미터 이상 2.5미터 이하의 높이에 조도식 또는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하며 부득이한 장소에는 수동 스위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명시설 설치지역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설치 우선순위)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조명시설이 설치될 경우 수해가구가 많은 지역
3. 아동·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4.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설치제한)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1. 개인(집 마당, 축사, 사업장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
2. 독립가구의 막다른 골목길(단,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공공기관 등 공공시설 부지 내
4. 그 밖에 군수가 조명시설을 설치할 장소로 적정치 않다고 판단한 곳

제7조(설치 및 관리계획) 군수는 조명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조명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절차) ① 조명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설치 신청서(이하 “설치 신청서”라 한다)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의 동의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설치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군수에게 조명시설 설치를 요청한다.

③ 군수는 해당 설치 신청서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제7조에 따른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의 신청지 이외에 조명시설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민원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9조(비용부담 등) ① 조명시설 설치와 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는 군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공동주택, 상가, 기업 등이 설치한 조명시설은 그 소유자 및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제10조(관리책임자) 가로등 및 보안등의 관리책임자는 업무부서장이 된다. 다만 시설등과 사업부서장이 관리하도록 협의한 가로등 및 보안등의 관리책임자는 사업부서장이 된다.

제11조(관리대장 및 표찰) ① 군수는 조명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명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 및 보수) ① 군수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과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을 보수하여야 한다.

제13조(조명시설 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의 이설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이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창군의 부담으로 조명시설을 이설할 수 있다.

1. 조명시설의 안전문제에 따라 긴급히 이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명시설의 환경변화에 따라 본래의 설치목적은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조명시설의 이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조명시설 이설 신청자가 해당 시설을 임시 철거할 경우에는 도로 및 보안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 설치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4조(훼손시설의 복구) 군수는 조명시설을 훼손한 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원인자부담으로 원상복구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5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군수는 조명시설과 관련된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회수
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징수

제16조(조명시설 수리) 군수는 조명시설의 안전문제 또는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을 수리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조명시설 설치 신청서

설치위치(주소)	
(가로등·보안등) 수혜가구 및 주민수	
설치사유	
기타의견	
비고 (전신주번호 등)	

※ 첨부 : 설치지점 약도 또는 현장사진 1부.

위와 같이 조명시설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 읍·면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조명시설 이설 신청서

신청인	성명 (명칭)		전화번호	
	주소			
신청대상	신청위치			
	신청량	이설 가로등 이설 보안등	본 본	도로명
신청사유				
공사기간		. . . ~ . . . (일간)		
<p>상기와 같은 사유로 조명시설 이설 신청서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인)</p> <p>고창군수 귀하</p>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3년 5월 10일

고창군 조례 제 2705 호

고창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
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
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고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수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하여는 주택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3.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4.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7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절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 편성)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제10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3년 5월 10일

고창군 조례 제 2706 호

고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개발사업을 말한다.
-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증대 및 지역경관개선시설, 주민편익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창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설물의 운영·관리)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을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이 있는 해당 지역의 읍·면장에게 운영·관리토록 하거나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에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해당 위원회에 기초한 공동사업법인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마을회, 지역공동체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수의계약대상으로 정한 경우

제5조(위탁료) 군수는 시설물 운영·관리에 따른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운영·관리 수탁자에게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위탁기간) ①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2월말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1.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3. 관리수탁자가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즉시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경비의 지원 등) ①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설이용료 등의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유지 보수비
- 2.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전기, 수도, 통신, 무인경비등 공공요금
-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수리·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 1. 소득 창출 시설물이 없는 경우
- 2.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위탁시설인 경우

3. 당해년도 발생 소득이 손익분기점을 초과하지 못하였을 때,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인정받은 경우

제10조(이용료) ① 개발사업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시설물 이용자”라 한다)는 관리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의 기준은 사회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12조(이용료의 환불) 이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환불한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환불
2. 이용일 3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전액환불
3. 이용일 1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50퍼센트 환불

제13조(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고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부서장,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장, 시설물소재지 읍·면장
2. 위촉직 위원
 - 가.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 나. 농어촌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 다. 시설물 소재지 주민대표
 -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촉해제 등)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할 경우
2.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회의 안전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있는 안전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0조(손해보험 가입) 군수 또는 수탁자는 이용자 등의 재산 및 신체의 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1조(손해배상) 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손실·훼손·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지도감독) ① 관리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위탁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위탁은 이 조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고창군 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3년 5월 10일

고창군 규칙 제 1216 호

고창군 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 같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람의 연고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민등록을”을 “주민등록지를”로, “사람의 연고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고창군 관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
- 4. 고창군에 주민등록지를 둔 사람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 5. 기존 안치된 유골의 배우자
- 6.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사용자의 범위) ① 「고창군 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사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창군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사망한 <u>사람의 연고자</u> 2. 고창군에 <u>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u> 3. 고창군에서 <u>개장한 유언고 유골의 연고자</u> 4.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중 고창군에 <u>주민등록을 둔 자</u> <p><신 설> <신 설></p> <p>② (생 략)</p>	<p>제3조(사용자의 범위) ① ----- -----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u>사람</u> 2. ----- <u>주민등록지를</u> ----- - <u>사람</u> 3. <u>고창군 관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u> 4. <u>고창군에 주민등록지를 둔 사람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u> 5. <u>기존 안치된 유골의 배우자</u> 6. <u>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u> <p>② (현행과 같음)</p>

고창군 고시 제2023 - 68호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고시

고창군 의회에서 의결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6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2일

고 창 군 수

1. 명 칭 :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2. 주요내용

- 협의회 명칭, 목적, 구성 및 자격, 사업(제1조~제4조)
- 임원의 구성, 직무, 사무국, 회원의 임무(제5조~제8조)
- 협의회 회의, 소집, 의결, 실무협의회(제9조~제12조)
- 협의회 수입, 지출, 회계보고 및 결산, 사무인계인수(제13조~제16조)
- 협의회 규약개정·폐지, 기타 등(제17조~제18조)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69조 ~ 제175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6조 ~ 제103조

<붙임>

-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붙임 1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2023. 4. .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방사능방재법」에 의한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내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전관련 모든 문제에 관하여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및 자격) ① 협의회의 회원은 원전 인근지역에 소재하면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있는 “별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며, 원전이 소재한 5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한다.
② 회원의 추가 구성은 회원 과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4조(사업) 협의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원전 안전정책에 관한 공동대응 및 제도개선 사항
2. 원전 인근지역 주민보호 및 복지사업에 필요한 세원 발굴 사항
3. 원자력 국가정책 홍보 및 주민교육 등 협력에 관한 사항
4. 원전 인근지역 방사능 방재 및 시설 방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조 직

제5조(임원의 구성 등) ① 협의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정례회에서 선출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사무국) ① 협의회 업무 처리를 위하여 회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도시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담당부서 직원으로 하되, 별도로 사무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직원은 사무국 설치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파견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회원의 임무) ① 회원은 상부상조 및 신뢰 증진에 힘써야 하며,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고 협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 원활한 운영과 사업을 위하여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회 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는 연 2회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정례회는 단체장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

리참석이 가능하다.

- ④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회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⑤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0조(소집)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회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결) ① 모든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로 한다.

제12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실무협의회는 회장이 소속된 자치단체의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이 회장이 되고, 회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을 회원으로 한다.

- ③ 실무협의회는 공통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④ 실무협의회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도 협의회 회장이 승인하면 정례회와 임시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4장 재 정

제13조(수입) ① 협의회의 수입금은 연회비와 특별회비로 한다.

②회비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며, 연회비 금액과 특별회비 금액은 정례회에서 정한다. 단, 협의회 창립 첫 해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1,000천원씩 부담한다.

③ 특별회비는 신규 행사·사업 추진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거나, 협의회 운영 예산이 부족할 경우 부득이하게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지출) ①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
2. 그 밖에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지출

②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지출은 할 수 없다.

제15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협의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 회계는 사무국장이 담당하고, 매년 1회 정례회에서 예산편성과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여 협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사무 인계인수) 회장은 임기만료 후 1개월 이내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다음 회장에게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7조(규약의 개정·폐지) ① 규약의 개정 및 폐지는 재적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회에서 의결된 규약의 개·폐지안은 각 회원도시의 지방의회 보고를 거쳐 고시 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타)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

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회칙의 폐지) 이 규약의 시행과 동시에 2019년 10월 23일 제정된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운영회칙」은 폐지한다.

제3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규약 시행 전에 선출된 임원의 잔여임기는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초대 임원으로 승계한 것으로 본다.

[별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회원

지방자치단체명	비 고
23개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북구, 동구	
강원도 삼척시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군	
전라남도 무안군, 장성군, 함평군	
경상북도 포항시, 봉화군	
경상남도 양산시	

고창군 고시 제2023 - 71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대동, 부정, 회룡)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대동, 부정, 회룡)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10일

고 창 군 수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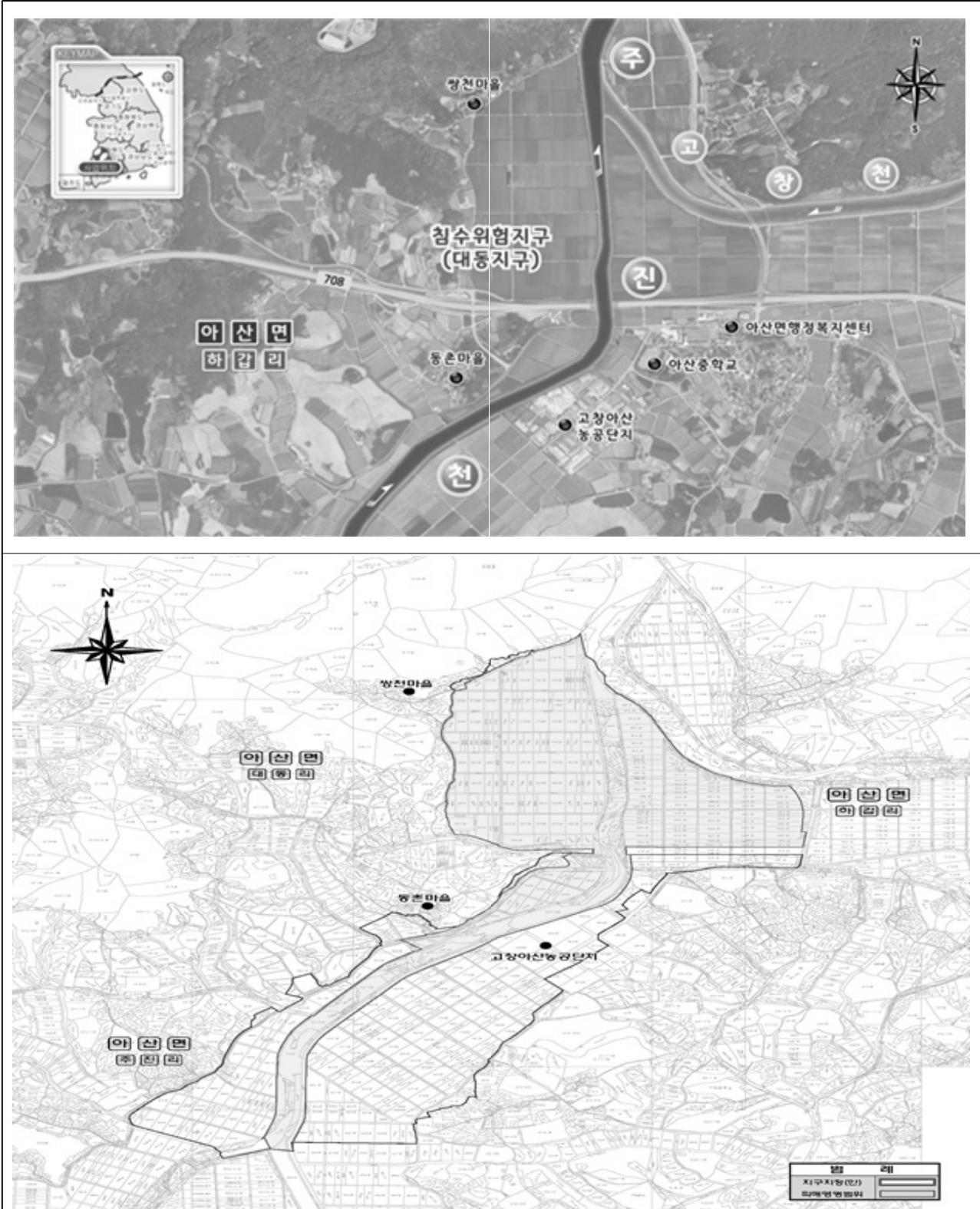
지구명	위 치	지정개요			지정 사유	비고
		지정면적 (㎡)	유형	등급		
대동지구	전북 고창군 아산면 대동리 26-7번지 일원	1,035,362	침수 위험 지구	나	집중호우시 주진천 수위상승으로 내수배제가 불량하여 주거지 및 농경지의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고 향후 침수피해 예상되는 지역임	
부정지구	전북 고창군 아산면 계산리 695-47번지 일원	17,790	침수 위험 지구	나	집중호우시 주진천 수위상승으로 내수배제가 불량하여 주거지 및 농경지의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고 향후 침수피해 예상되는 지역임	
회룡지구	전북 고창군 공음면 장곡리 1001번지 일원	66,500	침수 위험 지구	나	칠암천(지방하천) 외수위 상승에 따른 내수배제 불량 및 우수관로 통수능 부족에 따른 월류로 침수 발생	

2. 기 간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5항에 따른 지정해제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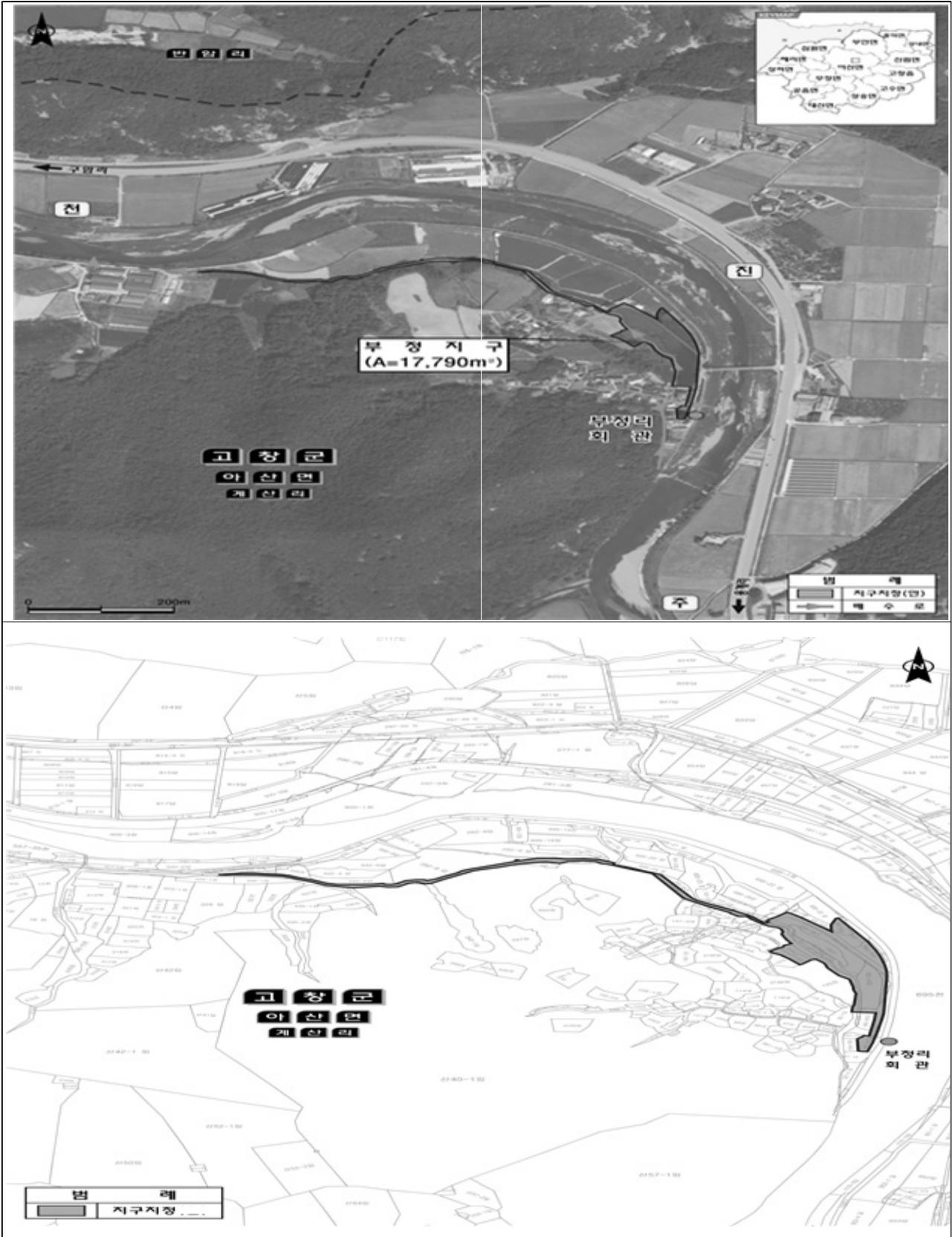
3. 도면열람 및 문의사항 : 고창군청 안전총괄과(063-560-2663)

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위치도 및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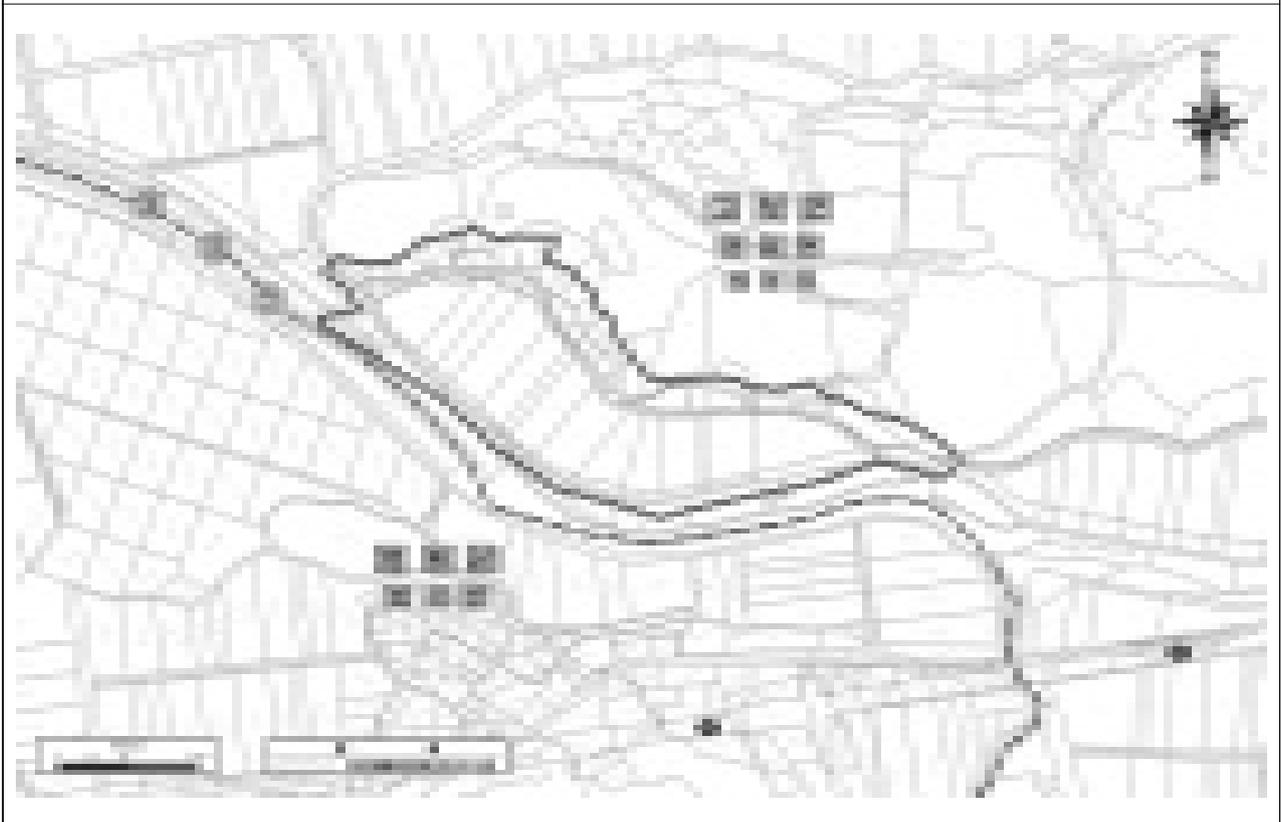
▣ 대동지구



부정지구



■ 회룡지구



고창군 공고 제2023-973

고창군 여성친화도시 제3기 군민참여단 모집 재공고

‘여성친화도시 고창’을 위하여 발전적인 정책제안 및 추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을 공개 모집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4일

고 창 군 수

1. 모집 개요

- 공고기간 : 2023. 5. 4.(목) ~ 5. 17.(수)
- 접수기간 : 2023. 5. 4.(목) ~ 5. 17.(수)(2주간)
- 모집대상 : 만19세 이상 고창군민
- 모집인원 : 30여명 내외
- 입 기 : 2년(연임 1회 가능)
- 신청서류
 - ▶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지원신청서 및 1부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nana2305@korea.kr)
 - ▶ 이메일 제목 :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신청(홍길동)
- 문 의 처 : 인재양성과 여성정책팀(☎063-560-2931)

2. 활동내용

- 회의 참여(필요시 수시 운영)
-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홍보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및 합동캠페인 등(연1회)
- 공공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생활 불편사항 개선 건의
- 여성친화 관점을 반영한 다양한 의견 제안

<p>● 여성친화도시(고창군지정 2020년~2024년)</p> <p>지역 정책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친화도시' 지정</p>

3. 활동지원

-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개최
- 활동비 실비 지급

4. 선정방법

- 성별, 연령, 활동경력, 관심분야, 읍면별 등을 고려하여 선정
- 군민참여단 선정자 개별 안내

5. 기타사항

- 접수된 신청서 등은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군민참여단 활동에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활동 유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해촉할 수 있음

「고창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No. _____ (※ 지원자께서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 명		성 별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생년월일		직 업	
주 소	고창군		
연 락 처	(휴대폰)	(이메일)	@
관심분야 선 택 (번호기재)	<input type="checkbox"/> 안 전 <input type="checkbox"/> 경제활동 <input type="checkbox"/> 돌 봄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input type="checkbox"/> 성평등인식 <input type="checkbox"/> 역량개발		
	1순위(), 2순위(), 3순위()		
주요활동 경 력	기 간	기관 및 활동내용	
자격·면허 보유사항	연 도	자격·면허사항	
<p>본인은 고창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3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p> <p>고창군수 귀하</p>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고창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합니다.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p>(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창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위촉절차의 집행 및 관리, 경력·자격 등 확인(조회 및 검증), 위촉 여부의 결정, 민원처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집됩니다. <p>(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항목 (본인 확인,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식별정보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 연락처정보 : 주소,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전자우편주소) ○ 선택항목 (대상자 선정심사에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사항 : 관심분야, 주요 활동사항, 자격·면허보유, 지원동기 등 <p>(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는 귀하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한 날로부터 보유하며, 해당 정보는 임기종료(해촉)의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 지체 없이 안전하게 파기됩니다. <p>☞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하께서 제출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이 가능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받는 자 : 고창군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자격조회, 군민참여단 현황관리, 통계작성 등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상기 명시한 개인정보 수집항목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임기종료(해촉) 시까지 <p>☞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에게로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고창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선정(위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고창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선정(위촉)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

고창군 공고 제2023-977호

고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05. 04.

고 창 군 수

1. 공 고 명 : 고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열람공고
2. 대 상 지 : 고창군 공음면 두암리 산125-1 외 2필지
3. 지정사유 :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4. 공고기간 : 2023. 05. 04. ~ 2023. 05. 24.(20일간)
5. 이의신청 : 공고기간내
 - 가. 접 수 처 : 고창군청 산림공원과(☎063-560-2592)
 - 나. 신청양식 : 이의신청서(붙임)
6. 지정예정일 : 2023. 6월중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7. 지정예정지 도면 : 게재 생략(고창군청 산림공원과 방문 열람 가능)
8.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 참조
9. 경과조치 : 위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함.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산림공원과(☎063-560-25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고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조서

연번	포지소재지				지번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취약지역 유 형	사업종류	소유자		비고
	시도	시군	읍면	리						주 소	성 명	
계					3필지	234,105	3,742					
제2023-1호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	두암리	산125-1	125,058	2,130	토석류	계류보전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 동학농민군로 *** (제우 강**)	****정물공파
소계						125,058	2,130					지정
제2023-2호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산141	91,512	574	토석류	계류보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토67번길 *** (동진동)	서+을 외2인
소계						91,512	574					지정
제2023-3호	전라북도	고창군	심원면	도천리	산79	17,535	1,038	토석류	계류보전		해리면 왕촌리 ***	박+기
소계						17,535	1,038					지정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15.12.3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 이유				
지정 예정지	소재지			
	면적	m ²		
이의신청 면적				m ²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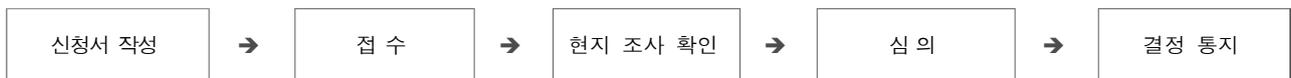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 리 기 관: 지역산사태예방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보호법」 발췌

제45조의10(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본조신설 2012.2.22]

제45조의11(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결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54조(벌칙) ② 4. 제45조의10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